

27.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일 2015. 3. 23.
제정일 2010. 5.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베뢰아국제대학원 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Berea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Committee on Research Integrity,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 소속 교원, 연구원, 학생 및 기타 본교 내 연구 활동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2조(적용대상)에서 규정하는 자가 본교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연구 활동, 즉 연구논문출판, 학위논문작성제출, 학과목학점취득 시 요구되는 과제물 및 보고서와 발표 등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상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기존연구내용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확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 또는 출판을 위해 심사 중에 있는 자료내용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7. 그 밖에 인문·사회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제5조(연구환경 및 연구관리) ① 본교의 위원회는 본교 소속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재정적인 연구지원(세부사항 “전임교원 연구비 및 대외학술활동지원방안” 참고) 및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② 본교의 위원회의 장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및 지원) ① 위원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년 2회 이상의 연구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자의 의무) 본교의 연구자는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부정행위를 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2.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금지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당연직위원과 3인의 추천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을 포함한 전임교원으로 하며, 추천직위원은 교외의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교수회 회장으로 한다.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특별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역할 및 연구부정행위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수시로 접수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였거나 그 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소집하여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제10조(추천직위원의 임기) 추천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위하는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 청취를 허락한다.

제13조(경비) 본교는 본 위원회의 회의, 자문, 심사 및 위원회와 관련된 활동 그리고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조치를 추진할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한다.

1.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연구윤리 교육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연구윤리 문화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각종 교육에 필요한 경비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연구기관 등 및 전문기관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본 위원회와 본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⑥ 제보자는 본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15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는 제보자의 제보나 위원회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와 기준

-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책임의 주체)** ① 제보 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의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인 본교 위원회에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3의 전문기관에 직접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제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본교의 위원회에 있

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위원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필요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9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때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3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20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21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
 - 2.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

제22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②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회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

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판정) ① 판정은 위원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교 위원장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 등)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사를 실시한 본교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

제26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위원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각각 10일 이내에 본교 총장과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8. 검증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③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본교 총장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본교 총장 및 교육부장관과 조사를 실시한 본교 위원회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7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본교 총장 및 교육부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의 협약해약,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 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교 총장 및 교육부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교 위원회에 대하여 추가조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를 실시한 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장 기 타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도 9월 2학기부터 시행한다.